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85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임종득 · 김예지 · 서천호
김상훈 · 이달희 · 강대식
김성원 · 윤상현 · 추경호
박성훈 · 정점식 · 강명구
김기현 · 이준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어, 돌봄이 시급한 초고령자나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 연령이 높은 노인과 농촌 및 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연령 및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대상·내용, 취약지역의 범위, 서비스 연계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생략) <u><신설></u>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보호 조치를 함에 있어 연령 및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u>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대상·내용, 취약지역의 범위, 서비스 연계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